

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 중 일부개정

1. 개정 이유

가. 비료에 함유된 잔류농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정분석법 설정

2. 주요 내용

가. 비료에 함유된 잔류농약 공정분석법 설정 (별표 1)

- 농약별 분석방법을 농진청 고시 「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」 과 동일하게 적용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(입안근거): 「비료관리법」 제18조제2항 및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 타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◎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-27호

「비료관리법」 제18조제2항 및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6년 5월 25일

농 촌 진 흥 청 장

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 중 일부개정

별표 1의 목차에서 IV. 기타성분 “18. 항생물질” 다음에 “19. 농약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농약별 정량한계 및 분석방법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「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」 별표 5에 따른다.

부 칙 <2016. 5. 25.>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재검토기한)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 중 일부개정(안)]

현행	개정(안)
	<p>부 칙 <2016. 5. 25.>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재검토기한)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
<p><별표 1>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목 차 IV. 기타성분 19. (신 설)</p>	<p><별표 1>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목 차 IV. 기타성분 19. 농약</p>
<p><별표 1>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IV. 기타성분 19. (신 설)</p>	<p><별표 1>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IV. 기타성분 19. 농약</p> <p>가. 농약별 정량한계 및 분석방법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「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」 별표 5에 따른다.</p>